

第269回國會
(定期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9月19日(水)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소위원회 위원개선의 건
2.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4.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7. 국가회계법안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2.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農地法 일부개정법률안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9.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 衛生士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3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33.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34.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4.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4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8.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
4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5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5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57.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1. 소위원회 위원개선의 건	8
2.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3.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8
4.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9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정부 제출)	18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1
7. 국가회계법안(정부 제출)	21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혁규 의원 대표발의)(김혁규·강길부·권선택·김재홍·김종률·김우남·박찬석·오제세·윤원호·이시종·장복심·정갑윤·조경태·최철국 의원 발의)	26
9.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강길부·권선택·김동철·김재홍·김종률·김춘진·김형주·노영민·노현송·문학진·박명광·박상돈·박찬석·배기선·백원우·서재관·신상진·신학용·심재덕·안상수·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제창·윤호중·이광재·이기우·이시종·이영호·이해봉·이화영·장향숙·정병국·정봉주·최용규·최재성·최철국·한광원·한병도 의원 발의)	27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9
12.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9

13.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3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16. 農地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신중식·한화갑·장경수·이인제·김영 덕·박병석·류근찬·김학원·홍문표·심재덕 의원 발의)	35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 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36
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 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36
19.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 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36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 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36
21. 衛生士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 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36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신상진·김태년·이인 기·정동채·오제세·안상수·정진석·배일도·이윤성 의원 발의)	36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2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2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재훈·유재건·박상돈·심재 덕·한광원·이인기·노현송·이계경·변재일·이종걸·최성 의원 발의)	41
3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 진·엄호성·박명광·유승민·이인기·이해봉·이영호·김태홍·안민석·안상수·배일도·강창 일·박세환·최경환·박상돈·김명주·김재홍·박찬숙·김재경·심재덕·우제창·이강두·공성 진·이강래·김영덕·이낙연·장영달·최인기·이호웅·신상진·김효석·유선호·주승용·신국 환·김영선·염동연·이계진·변재일·김성곤·한화갑·고조홍·김재원·한병도·한선교·강기 정·김무성·최용규·이상배·조경태·조배숙·정희수·최규성·최구식·최재성·정종복·임인 배·권오을·조승수·김정권·이병석·이인제·신중식 의원 발의)	41
3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재홍·이낙연·엄호성·안 상수·김선미·조승수·황우여·배기선·이해봉·신기남·정성호·허태열·김충환·진수희·조 성래 의원 발의)	42
33.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34.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 출)	47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7
3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7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7
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7

40.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7

4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7

42.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 · 주성영 · 이해봉 · 엄호성 · 김태환 ·
곽성문 · 유승희 · 이인기 · 안병엽 · 김성조 · 공성진 · 이계경 · 김광원 · 이상배 의원 발의) 50

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고조홍 · 김광원 · 김명주 · 김용갑 · 김우
남 · 김재경 · 김충환 · 신상진 · 안상수 · 안영근 · 엄호성 · 윤두환 · 이상배 · 이인기 · 이주영 · 이진
구 · 임인배 · 정의화 · 정희수 · 차명진 · 황진하 · 허천 · 허태열 의원 발의) 50

44.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유필우 · 장복심 · 신
학용 · 한광원 · 원혜영 · 김정권 · 김교홍 · 정장선 · 박상돈 · 강길부 · 변재일 · 신국환 · 문석호 · 주
승용 · 양형일 의원 발의) 50

4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 · 김정권 · 문학진 · 최규성 · 유승민 · 최병국 · 김재윤 · 채일병 · 정의화 · 이낙
연 · 주성영 · 김종률 · 김효석 · 이계경 · 박상돈 · 오제세 · 유선호 · 고조홍 · 손봉숙 · 채수찬 · 임인
배 · 김형오 의원 발의) 50

4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 · 양형
일 · 우제창 · 변재일 · 이종걸 · 이근식 · 장복심 · 조일현 · 박상돈 · 노현송 · 이영순 · 유선호 · 최규
식 · 주승용 의원 발의) 50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김교홍 · 안상수 · 박찬석 · 최순영 · 박명광 ·
정봉주 · 민병두 · 장복심 · 이경숙 · 황우여 · 한광원 · 이은영 · 지병문 · 유기홍 · 정장선 · 김영춘 ·
최재성 · 안민석 · 우제창 의원 발의) 52

48.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김교홍 · 안상수 · 박찬석 · 최순영 · 박명광 ·
정봉주 · 민병두 · 장복심 · 이경숙 · 황우여 · 한광원 · 이은영 · 지병문 · 유기홍 · 정장선 · 김영춘 ·
최재성 · 안민석 · 우제창 의원 발의) 52

4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52

5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구논회 · 신기남 · 이강래 · 지병문 · 정봉주 ·
박병석 · 권선택 · 유시민 · 이인영 · 김태홍 · 한병도 · 김희선 · 백원우 · 선병렬 · 김춘진 · 강기정 ·
주승용 · 최순영 · 장영달 · 현애자 · 이영순 · 권영길 · 천영세 · 김태년 · 최재성 · 조승수 · 이광철 ·
이미경 의원 발의) 52

(10시33분 개의)

○**委員長 崔炳國**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이재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이재오 위원님, 김종률 위원님, 최재천 위원님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재오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崔炳國**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종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종률 위원** 지금까지 계속 재경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명을 받아서 법사위에 오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 잘 모시고 선배 위원님들 잘 지도 · 편달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감사합니다.

오늘 최재천 위원님은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신임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 출신 위원님들뿐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존경을 받고 계시는 경륜과 학식 그리고 덕망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업무도 우리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관인 사법기관들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논리보다는 합리적인 법률논리가 우선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을 좀 이어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예산안 그리고 법률안 심사 등 제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주어진 과제들을 잘 처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이상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법무부의 현안보고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에 대한 처리방법은 국회법 제77조 본회의 규정을 준용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교섭단체 간사 간에 처리방향을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예.

○**문병호 위원** 대통합신당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우선 최병국 위원장님의 법사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委員長 崔炳國** 감사합니다.

○**문병호 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님께서 법사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법사위원회가 합리적인 토론을 하고 정말 당파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정성진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 출석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사실은 국회 본연의 임무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

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신임 장관도 취임을 했고 또 오늘 정기국회 첫 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출석을 해서 취임인사도 해야 되고 또 법무부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앞으로 법무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장관의 포부도 밝히고 또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것을 법무행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회의에 장관도 출석도 안 하고 또 현안보고도 없고 이것은 뭔가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에서는 추석 전에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아예 상임위의 안건에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것은 넣지 마라 이런 당의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혹시 법사위 오늘 안건 정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현안보고나 법무부장관 출석이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최병국 위원장님께서 그럴 리는 없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해서 대통합신당 위원들은 오늘 이 시간, 시간 충분하니까요. 지금이 아니라도 오후 2시에라도 법무부장관 출석시켜서 현안보고 듣고 또 질의응답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세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제가 간단히 설명 좀 드릴게요.

박세환 위원님, 말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세환 위원** 예.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박세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세환 위원** 새로운 법사위원장님의 취임을 맞이해서 우리 법사위가 국민만을 생각하고 모든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운영돼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합민주신당인가? 당 이름도 잘 몰라 가지고……

여기서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보면 말씀은 법무부 현안보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왜 하필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신정아 사건으로 인해서 대법원 소속 법관들이 영장을 기각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법무부에 대한 현안보

고만 요구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수긍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앞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현안보고를 듣겠다라는 명목하에 뭔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기왕에 오늘은 여야 간에 간사가 협의를 해서 일단 50여 개에 이르는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돼 있는데 느닷없이 법무부의 현안보고안을 끼워 넣자 이런 것은 정말 수긍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추후에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고, 또 기왕에 이런 의사일정 동의의 건이 들어왔으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른 기관은 또 현안보고를 받을 것이 없는지 이런 점도 좀 세심히 살피셔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한 점 의혹이 없는 그런 법사위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그리고 박세환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법사위에 와서 현안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고요. 또 박세환 위원님께서 이뿐 아니라 다른 우리 소관 부처에서도 현안보고할 것이 있으면 같이 하자는 말씀도 다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국회는 연말에 있는 대통령 선거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좀 단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대충 질의 다 했고요. 또 10월 들어가면 바로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또 국감도 연이어 있고요.

지난 9월 11일 국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15일은 아마 대통합민주신당 행사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의사일정을 짜다 보니까…… 고의로 아까 상위 안전에 현안보고를 넣지 말자고 했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런 경우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의사일정이 각 정당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이론이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안보고를 받을 게 있으면 두 간사님들이 언제든지 합의해 가지고

어떻든 나중에, 안 되면 추석기간에라도 합시다. 언제든지 하자고요. 그런데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 50여 건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법안을 원만히 처리를 해야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委員長 崔炳國** 예.

○**선병렬 위원** 오늘 의사일정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우리 당의 이상민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지요. 사실은 지난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같으면 미리 후보자 되는 순간 법무부의 보고도 받고 소상히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을 텐데 후보자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아직 법무부장관 취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체 법무부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내실 있는 답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또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쟁점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자는 취지보다는 그때, 후보자 때 듣지 못했던 내용을 좀 짚막짚막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장관된 당시 후보자 입장에서 분명히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또 국정감사 직전에 청문회 때 제기됐던 문제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장관을 상대로 짚고 넘어감으로 해서 다음에 또 현안, 아니지요. 본 위원회 고유 법안 심사할 때도 많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당 위원들은 우리 당 간사이신 이상민 간사 위원께 짚막하나마 오전 중에 몇 시간이라도 법무부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요청한 건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고, 다행히도 박세환 위원님께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장께서 별도로 안을 지정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신정아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 자체도 사실은 법원에 대해서 청문할 일도 있겠지만 법무부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해서도 그 내막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유법안 심사하는 날이라든가 그 직전에 법무부에 대한 현안 질의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 당의 입장을 위원장님한테 밝혀 두고, 꼭 양당 간의 합의만을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절감한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다른 위원님!

○**이상민 위원** 선병렬 위원님 말씀 중에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은 다소 부정확한 말씀이고요. 제가 간사 간 협의를 다소…… 우리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관찰시키지 못한 제 과실로 좀 간과하게, 좀 소홀히 협의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당 쪽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돼서 협의된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우리 박세환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시니까 필요한 기관들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었으면 싶습니다. 날짜를 오늘 오후로 하든지 아니면 적당한 날짜에, 최대한 일 내에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없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들,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의사일정도 소홀……

○**김종률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한 말씀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이 말씀 아납니까?

○**김종률 위원** 그것하고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委員長 崔炳國**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김종률 위원** 이상민 간사님 의견에 대해서 부연하고 반영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간사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법사위에 처음 보임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처음입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이 새로 임명되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현안들이, 국민적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것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장관이 참석하는 업무현안보고를 받지 않는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의사일정을 협의를 하고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지, 비유를 하자면 마치 핵심과 본질이 다 실종되어 있는 상임위 하자는 것과 뭐가 다른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당연히 의사일정 과정에서 참석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님은 부인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원내 정기국회 전략에 따른 것임을 왜 부인을 하십니까? 공개석상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취지는, 업무보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자칫하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다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법사위원회가 공범자라고 하는 그 질책과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아까 박 위원님께서 현안보고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또는 느닷없이 제기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업무현안보고가 정파적 이해관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느닷없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저는 이 상임위에 보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법무부장관도 새로 부임했고……

○**박세환 위원**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다 했어요.

○**김종률 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청문회 결과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 현안보고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오늘 오후나 내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현안보고에 대해서 정파적인 이해관계나 시기를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지도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 현안보고에 대해서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오늘 오후나 내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예.

○**주성영 위원** 오늘 10시부터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의해서 30

분 연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대통합민주신당입니다.

○**주성영 위원** 통합민주당신당입니까?

그래서 30분 시간을 드렸는데 30분 동안 얘기 해서 간사께서 얘기하시면, 국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오면 표결 없이 처리하거나 간사 간의 협의에 맡기거나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대통합 민주신당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데 대한 아무 준비도 없이 마음을 비워 놓고 있으니까 제가 이상민 간사하고 회의 중간에 협의를 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회의진행 합시다.

○**委員長 崔炳國** 그리고 소관 부처 업무현안보고 할 준비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좀 주어 가지고 언제든지 하도록 두 간사님들,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안보고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개선의 건

(10시54분)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 일부 사·보 임됨에 따라서 일부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부한 유인물대로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56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19일간 실시하기로 본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를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법무부 등 56개 기관으로 하며 국정감사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업무현황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출석 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국정감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국정감사 계획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국정감사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10시58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각 기관은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일에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총 365건의 서류제출요구서가 접수되어 이를 그대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해서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일 7일 전까지 추가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병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사실은 법사

위 소관 기관이 법원이나 검찰이나 감사원, 그래서 비교적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도중이나 재판 도중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증하는 데 좀 제한이 있지만 수사가 끝나거나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의 적절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이 되어야 되고요. 자료제출이 정 곤란하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검증을 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기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계 기관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소관 부처에서 서류 같은 것을 좀 성실히 제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특히 수사기관……

○**委員長 崔炳國** 알겠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다 해 가지고 답변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마는……

○**문병호 위원** 특히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수사할 때는 수사 중이라고 해서 서류를 잘 제출하지 않고,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사실 국회에서 검증을 하고 그 부분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수사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서류 제출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거의 제출 않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꼭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委員長 崔炳國**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예, 협조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委員長 崔炳國**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1시00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 등 56개 기관에 대하여 총 56인의 기관장과 5인의 부서장을 기관증인으로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신청된 내용은 나경원 위원이 신청한 증인 3명, 노회찬 위원이 신청한 증인 13명, 총 증인 16명으로서 추가로 신청되는 증인 등과 함께 간사 간에 협의를 한 후 별도로 위원회 의결로써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에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崔炳國** 이것 마저 해 놓고 하지요.

○**이상민 위원** 증인 채택은요?

○**委員長 崔炳國** 증인 채택은 간사 간에 합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委員長 崔炳國** 오늘 합의해 가지고 그다음 다시 의결을 하든지 해서……

○**김종률 위원** 아니, 간사 간 협의를 거친 후에……

○**委員長 崔炳國** 그러니까 하는 것을……

○**김종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예, 하는 것을…… 증인이 신청된 사람을 우리 간사님께서서는 위원님들하고 여당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하고, 다시 또 추가로 진술할 수 있으면 하고……

○**이상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委員長 崔炳國** 예,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이래서 두 분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세요.

○**김종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종률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국감 앞두고 여러 가지 기관증인이 아니고 일반증인이나 참고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간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소명을 받고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신청하는 위

원 입장에서도 제출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와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그래요. 그러니까 간사 간에, 간사님들은……

○**김종률 위원** 아니, 간사 간에는 증인 채택에 대한 협의고요.

○**委員長 崔炳國**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당내에서 이리이러한 증인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가로 받기도 하고 현재 증인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몇 때문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충분히 논의하세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률 위원** 아니, 그것은 간사 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신청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소명을 어느 정도 하고 그것에 공감되어서 해야지 그것이 무슨 물건 주고받기 식으로 증인 채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그런데 소명 그런 것, 아마 자료를 지금 못 받으신 모양인데……

○**김종률 위원** 아니, 거기에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증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국감 증인을 채택하겠다는 부분이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 간사 간에 증인 채택에 관한, 일반 증인 채택을 하는 데 있어서 협의하는 자료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오늘 나경원 위원님하고 또 노회찬 위원님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님들이 다음 위원회 때 나와서 자기들이 신청한 참고인이 필요한 데 대해서 또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인……

○**김종률 위원** 그것은 신청하신 분들이고 저는 제가 증인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증인이고…… 기관증인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그런데 지금 신청을 말이지요,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하세요. 신청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가지고 간사들이 합의를 하세요. 그래 놓으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채택을 할 때 ‘이리이러한 것 때문에 채택한다’ 이렇게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崔炳國** 예, 말씀하세요.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기관 증인, 여기 배포한 유인물에 나온 증인들의 채택은 오늘 결정을 하고 나머지……

○**委員長 崔炳國** 결정을 하는데 이것도 간사 간에 협의를 해야 결정을 하지요.

○**이상민 위원** 이것도 아직 결정 안 한다는 것입니까?

○**委員長 崔炳國** 기관증인은 그렇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참고인……

○**이상민 위원** 기관증인은—여기 유인물에 나온 사람들은—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委員長 崔炳國** 예, 56인은 하고……

○**이상민 위원**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간사 협의를 거쳐서 추후 결정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崔炳國** 그렇지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상민 위원** 예, 그런데 기관증인 중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있어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출석요구도 오늘 결정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崔炳國** 예.

○**이상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하철용,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만약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두 분은 필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崔炳國** 이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이상민 위원** 제 의견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사무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 여부가 결정돼야지 지금 현재소장……

○**委員長 崔炳國** 예.

○**이상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처장 하철용, 대법원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결정이 되면 사실 관례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 거의 전원이 대법원장, 현재소장 출석요구를 했고 작년 기준에서 올해에는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일문일답으로 해야 된다는 다른 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대한 기관

증인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면 추후에 했으면 싶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예, 지금 이 말씀은요, 이해를 잘 못하신 모양인데 기관증인으로서 출석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그렇게 말씀해 놨지요. 그저 출석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그때 가서 세부 결정은 돼야 될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의 증인 채택 목록에 하철용, 대법원 장윤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출석을 한다면 이분들은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지요.

○**委員長 崔炳國** 아니지요. 인사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인사도 하고 가고 마지막에 와서 인사하고 그게 출석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이 안 됐다니까요.

○**委員長 崔炳國** 이것은 증인은 아닙니다.

○**이상민 위원** 기관증인 채택한다면서요?

○**委員長 崔炳國** 기관증인 56명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두 분다……

○**委員長 崔炳國** 그것을 할 때는 같이 합의하면 되지요.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건은 하철용, 장윤기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부서장은 부서장으로 서……

○**委員長 崔炳國** 이것은 부서장이니까요.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야 결정될 일이지.

○**委員長 崔炳國** 부서장은…… 56명이 다 부서장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委員長 崔炳國**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충분히 간사님들 간에 합의하세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은 행정처장, 사무처장—그러니까 처장들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은 당

연히 증인으로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든지 헌법재판소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증인으로 할 것인가 참고인으로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해 주세요.

○**문병호 위원** 협의를 하지요.

○**委員長 崔炳國** 그것은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 그런다면 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작년 국감 때 전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출석해서 일문일답 답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철용 사무처장이나 장윤기 행정처장은 필요 없지요. 그 사람들이, 왜 증인채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해야지 지금 하철용, 장윤기 처장을 채택해 놓으면 결국 관례대로…… 우리 위원장님 구상은 헌재소장이나 대법원장은 그냥 나와서 인사하고 추후에 총괄적 답변……

○**委員長 崔炳國** 구체적인 그것은 간사들이 합의를 하세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 위원님들이 하철용, 장윤기를 오늘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추후 대법원장, 헌재소장을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하자라고 하면 별……

제 의견은 대법원장, 헌재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면 하철용, 장윤기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법원장, 헌재소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결정이 나면 하철용, 장윤기 처장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委員長 崔炳國** 이런 것을 갖다……

○**이상민 위원** 아니,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병렬 위원** 전체 증인을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다음 회의에……

○**委員長 崔炳國** 이게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상민 위원** 아니, 헌재소장하고 대법원장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선병렬 위원** 아니, 간사 간에 협의를 했어도 전체회의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보완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민 위원** 협의가 안 됐는데 여기다 올렸어요. 제가 오히려 강력히 얘기해서……

○**주성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간사 간에 협의를 안 했다는데 왜 했다고 하세요?

○**委員長 崔炳國** 발언권을 얻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주성영 위원** 선병렬 위원님, 잠시 제가 말씀……

○**선병렬 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이상민 위원께서 간사 간에 협의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성영 위원** 아니, 협의를 했어요.

○**이상민 위원** 이 2건……

○**주성영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상민 간사님 의견을……

○**이상민 위원** 안 했다고……

○**주성영 위원** 이상민 위원님!

○**委員長 崔炳國** 자, 좀 조용히 해 주시고 듣지요.

○**주성영 위원**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 관한 의견을……

○**선병렬 위원** 주성영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委員長 崔炳國** 말씀하고 난 후에 발언하세요.

○**주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우리가 협의를 하더라도 사무처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상정된 이 안건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대법원 행정처장은 우리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추후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복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결은 여야 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단 오늘 의결을 하고 그 문제는 우리가 추후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선병렬 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委員長 崔炳國** 지금 장내가 그거 하나까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선병렬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은…… 지금 저희들이 간사 협의를 하면 항상 2대 1입니다. 위원장님하고 한나라당 간사하고 우리 열린우리당, 표수로 치면 한나라당은 과반수도 안 돼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우리당 간사께서는 항상 의견만 낼 뿐이지 한나라당하고 대통합신당하고 의견이 배치될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의사를 관철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항상 ‘간사 합의됐다, 간사 합의됐다’ 그러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간사끼리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올라온 것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자, 그러면 여기 놓고 이야기 할게요.

○**선병렬 위원** 그리고 지금 이상민 위원님 주장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주성영 위원** 간사 대변인이야?

○**선병렬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나까 내가 알려드리는 것이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대변인이 아니라……

행정처장이거나 사무처장이 기관증인으로 선택이 되면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기관증인으로……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 기관증인이 되고 기관증인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처장이거나 법원행정처장이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관증인으로 사무처장이거나 법원행정처장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지요.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委員長 崔炳國** 예, 말씀 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요……

○**委員長 崔炳國**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현재하고 대법원하고 다음에 결정하시지요.

○**委員長 崔炳國** 내가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하시고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2대 1로써 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증인 협의할 때 이견 자체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뭐가 하지 않고……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사실을 꼭 해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대법원장하고 헌재소장이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委員長 崔炳國** 그것은 그냥 증인 채택 되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가 그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상민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의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헌재소장하고 대법원장…… 그것은 주성영 위원님도 마

찬가지입니다. 저는 현재하고……

○**委員長 崔炳國**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간사들 간에 합의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뒤에 합의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현재하고 대법원은 기관장인 대법원장과 현재소장이 나와야 된다, 중인 채택돼야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委員長 崔炳國** 그것은 합의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합의하자고 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관장……

○**委員長 崔炳國** 됐어요. 내가 여기서 토론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상수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委員長 崔炳國** 지금 헌법재판소 처장하고 대법원 처장은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었고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두 간사님이 추후에 그 상황에 따라서 합의해 가지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 뜻은……

○**委員長 崔炳國**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다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어떻게 되었던 것인가……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이 제 뜻을 잘못 알아들으셨는데요. 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관증인은 대법원장과 현재소장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병렬 위원** 그렇지.

○**이상민 위원** 그 뜻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그런데 대법원장이 하더라도 처장도 됩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委員長 崔炳國** 이야기하게 들어 보세요.

○**이상민 위원** 제가 발언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들으셔야지요. 왜 자꾸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제가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을 지금 채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기관증인으로 대법원장과 현재소장이고 만약에 사무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면 추후에 결정해서 채택하고자요.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거꾸로 하자 이 말씀입니까?

○**이상민 위원** 그렇습니다. 거꾸로 가야 원칙이라는 겁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주성영 위원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보면 기관증인으로 ‘이사장’, ‘사무총장’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원도 ‘감사원장’, ‘사무총장’ 되어 있으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헌법재판소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든 나오게 해야 되겠지만,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기관증인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 공동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대법원,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이렇게 해서 기관증인을 할 수 있어요.

○**주성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감사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의 예에서 보듯이 사무처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이의가 없는 부분이니까 오늘 의결을 해 두자 이 말이에요.

○**선병렬 위원** 아니지요, 기관증인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그것은 별도로 추가 논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관증인으로 그렇게 못박아 놓으면……

○**주성영 위원** 결정하자는 데 대해서 이론이 있다 이것입니다.

○**선병렬 위원** 그렇게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보는 것이지요.

○**委員長 崔炳國** 자, 장내를 좀 정리하는……

○**김종률 위원** 예,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발언 좀 할게요.

○**委員長 崔炳國** 예,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김종률 위원** 정리를 하면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기관증인 명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예컨대 감사원은 원장님하고 사무총장이 다 지금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만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아니라 보좌하는 사무처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균형이나 다른 기관의 예에도 적절치를 앞으니까 그 구체적인 논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또 그런 취지에 대해서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도 굳이 반대의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기관증인에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사무처장 또 대법원에도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넣으면 전혀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선병렬 위원** 제 의견이 그 의견입니다.

○**김종률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합리적인 그것을 달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崔炳國** 이제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어제오늘 주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 법사위원회에 근무한 것만 하더라도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까지 하면 10년이 넘는데요,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하자 하는 요구가 논란이 됐는데 한번도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양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세요. 해 가지고 다음 증인 채택할 때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전까지는 그전대로 양 처장을 기관증인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것은……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떤 우스운 모양이 되느냐 하면요, 지금 기존의 전례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대로 기관증인을 확정한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대법원법원행정처장은 기관증인으로 당연히 오늘 결정에 의해서 되는데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은 나중에 일반증인으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합의가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균형도 안 맞고 우스운 모양입니까?

그것은 또 간사 간에 협의도 거쳐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증인 채택하기 위한 표결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리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다른 기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기존의 관행을 이유로 해 가지고 모양을 우습게 만듭니까?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감사원도 사무총장 건만 하고 원장 채택요구…… 군사법원도 그렇습니다. 법무관리관만 부르고 국방부장관도 차후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위원장 부르지 말고 사무총장, 국가청렴위원회도 사무처장……

○**주성영 위원** 그것은 이론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이상민 위원** 아니,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만 별도로 이렇게 달리 취급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대해서 기관증인을 지금 채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관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불러야 된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것이 논의가 오늘 타결이 안 된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총괄적으로 다음에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되는 일인데……

○**委員長 崔炳國** 그래요, 기관증인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의 의의가 없어 가지고 56개 기관장은 하고 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추후 간사 간에 협의하기로 했는데 만약 이곳에서 지금 이야기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현재하고 대법원은 기관증인 신청을 하는데 대해서는 추후 양 간사들이 의논하기로 하고 그 이외의 54개 기관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54개 기관장 그리고 5인의 부서장, 이 사람들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박세환 위원** 아주 잘 됐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는 미리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국감장에 가야지 국감장에서 설왕설래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정리를 확실히 하고 가야 됩니다.

○**박세환 위원** 그게 여기서 정리한다고 정리가 되나……

○**委員長 崔炳國** 장내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아침 10시 전부터 관계부처 장관님들이 와 가지고 법안심사 때문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정회했다가 하면 싶습니다만 급한 사람 급한 것을 빨리 좀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김종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예.

○**김종률 위원** 이것 끝나면 일반법안 상정과 심

사로 들어가지요?

○**委員長 崔炳國** 예,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래서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정리를 해 주셨습시다만 향후 일반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간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법사위 상임위 전체 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채택이 안 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증인채택을 신청을 했고 그것이 채택이 안 됐을 때라도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는 이것은 우리 이쪽 당 상임위 차원이 아니고 제가 아직 제출은 안 했습니다만, 그 명단만……

○**委員長 崔炳國** 다음 위원회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률 위원** 아니, 이것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간사 간에 협의하면 기록에 안 남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그러니까 다음에 협의하고……

○**주성영 위원** 제출하면서 하세요.

○**김종률 위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김종률 위원님.

○**김종률 위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안 남지요.

○**박세환 위원** 발언을 하는 것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률 위원** 아니 뭐 의사진행발언하는 것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됩니까? 3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논란 걸리는 시간에 제 명단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3분도 안 걸립니다. 왜 논란을 벌여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주성영 위원** 증인채택도 안 하고 무슨 증인채택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委員長 崔炳國** 간사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증인채택할 때 하시면 안 됩니까?

○**김종률 위원** 저는 기록에 남기면서 간사들한테……

(장내 소란)

○**委員長 崔炳國** 자, 김종률 위원님……

○**김종률 위원** 아니, 어떻게 의사진행발언까지 막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까?

○**주성영 위원** 이것이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委員長 崔炳國** 자, 조용히 해 주세요.

○**김종률 위원** 저는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이것이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김종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 것까지 막습니까?

○**박세환 위원**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예요?

○**주성영 위원** 간사한테 얘기해요, 간사한테 얘기해!

○**김종률 위원** 간사한테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성영 위원** 간사한테 얘기했습니까?

○**김종률 위원** 주성영 간사는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항상 합니까?

○**주성영 위원** 간사한테 얘기해요.

○**김종률 위원** 간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崔炳國**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김종률 위원** 아니, 이런 엉터리 상임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성영 위원** 엉터리 상임위원회라니요!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委員長 崔炳國**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간사 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간사님들은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좀 하셔서 가지고 우리 회의가 참, 아주 조용하고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보고 문제도 어느 쪽에서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느냐 그래서 그게 잘 합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양 간사님들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증인 채택 건도 그렇습니다. 증인 채택하기 위해서 별도로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증인 신청이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지금 증인 신청한

우리 노회찬 위원님이라든가 나경원 위원님도 증인 신청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모든 위원님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종률 위원님은 그 회의 때 충분히 말씀하도록 그리 해 주시고 오늘은 또 내일 본회의도 있고 하나까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委員長 崔炳國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계속하면……

○김종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자체를 막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좋습니다. 그것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만 요점만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종률 위원 길게 안 합니다. 들어 보지도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막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의 기본적인 품격의 문제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의사 진행하는데 오늘 의사하고 관계있는 것을 해 주시면 좋지요.

○김종률 위원 관계있지요. 일반 증인 채택하는데 있어서 간사 간에……

○委員長 崔炳國 아직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오늘 증인 신청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한 것이지……

○김종률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 제가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갖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는 것을 왜 그것을 제약을 하십니까?

○委員長 崔炳國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의사에 관계없는 의사진행이 나오니까요.

○김종률 위원 아니, 제가 무슨 의사진행발언 할지를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 崔炳國 좋습니다. 좋은데요, 아직까지 오늘 증인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안이 상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률 위원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증인 일반적인, 개별 위원들 신청을 받아 갖고 협의를 시작하게 되면 오늘 기관증인 채택하고 일반증인의 경우는 간사 협의에 맡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委員長 崔炳國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말고 언

제 증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꼭……

○委員長 崔炳國 증인은 아직 아닙니다.

○김종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왜 신청해야 되는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왜 들어 보지도 않으시고 의사진행발언 자체를 제약하는, 세상에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委員長 崔炳國 의사진행 아까부터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해 보세요.

○박세환 위원 의사 진행에 좀 협조합시다.

○김종률 위원 의사 진행에 협조 좀 해 주세요.

일반증인 채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미리 기왕에 다른 위원님들 신청한 목록하고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곡동 땅 의혹 관련해 갖고는 이명박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씨 그리고 김현철 씨, 서청원 씨, 김만제 씨를 추가로 이렇게 의견을, 꼭 채택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위장 전입 관련 수사하고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현재 수사결과 발표도 했고, 그러나 아직도 계속 증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 그리고 당시 리라초등학교 교장 혹은 그 재직교사 또 이명박 후보의 삼남,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명박 후보의 삼남 이시형 씨하고 관련해서는 외국계 기부 입학, 청탁 취업 의혹이 상당히 중요한 형사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최근에 이시형 씨가 다니던 외국계 금융기관을 7월 말인가 8월 말에 사직했다고 합니다. 1년도 근무 안 하면서 사직한 이유가 이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형 씨를 증인하고 또 BBK 의혹하고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신청을 한 분들은 제외하고 에리카 김……

○주성영 위원 이상민 간사 어떻게 생각해?

○김종률 위원 다 끝났어요.

○주성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어떻게 생각해?

○김종률 위원 또 김백준 씨……

○이주영 위원 증인 신청하는 거지 의사진행발언이예요, 이게? 김종률 위원!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요!

○委員長 崔炳國 장내에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김종률 위원 들어 보고 판단하세요, 들어 보고. 다 마무리됐습니다.

- 이주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 김종률 위원 다 마무리됐어요.
- 이주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하겠다고 그런 게……
- 김종률 위원 세상에 회의를 이렇게 진행합니까?
- 이주영 위원 증인 신청을 하고 있잖아!
- 박세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
- 김종률 위원 아니, 이주영 위원님 회의를 늘 이렇게 진행합니까?
- 이주영 위원 똑바로 발언을 하시라고. 얘기한 것하고 취지……
- 김종률 위원 동료 위원이 이렇게 발언하는데 이렇게 개입합니까?
- 이주영 위원 원활하게 진행해야지……
- 김종률 위원 서로 기본을 지킵시다. 서로 기본을 지키세요.
- 委員長 崔炳國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 김종률 위원 법사위원회에서 체통을 지키세요.
- 이주영 위원 기본을 누가 지켜야 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 김종률 위원 의사진행발언……
- 주성영 위원 자 그만해! 그게 의사진행발언이야?
- 김종률 위원 이렇게 반말하고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는? 아니 이 위원회에서는 반말합니까, 늘 이렇게?
- 주성영 위원 그렇지 않냐고!
- 김종률 위원 동료 위원한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회피하고 막으려고 합니까?
- 주성영 위원 김종률 위원 동료 위원 아니야! 동료 위원 아니야!
- 김종률 위원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회피하고 막으려고 합니까?
- 주성영 위원 동료 위원 아니야! 동료 위원 아니야!
- 김종률 위원 들어 보세요!
- 주성영 위원 당신이 무슨 동료 위원이야!
- 김종률 위원 들어 보세요! 지금 제가 발언권 갖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성영 위원 누가 발언권이 있어!
- 김종률 위원 원칙과 법도 안 지킵니까!
- 委員長 崔炳國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 김종률 위원 최소한의 기본은 지킵시다!
- 委員長 崔炳國 자 조용히 하세요!
(장내 소란)
- 김종률 위원 서로 최소한의 인격을 갖고 얘기 하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발언한 지 몇 분 됐다고 또 방해를 합니까?
- 委員長 崔炳國 김종률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증인 채택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 주성영 위원 깡판 치러 왔어? 법사위에 깡판 치러 왔어?
- 委員長 崔炳國 그런데 그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 김종률 위원 여보세요, 지금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 주성영 위원 동료 위원이 아니야! 아니야!
- 김종률 위원 지금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 이주영 위원 위원장님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당장 중지시키고……
- 주성영 위원 이런 형편없는……
- 이주영 위원 이런 의사진행 하지 마십시오.
- 김종률 위원 최소한 기본적인, 그 기본은 지킵시다, 서로!
- 委員長 崔炳國 그런데 우리가 기본은 다 지켜야 되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 좀 절제를 하는 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 김종률 위원 지금 절제를 누가 안 해서 얘기합니까?
- 委員長 崔炳國 알겠습니다.
- 김종률 위원 지금 누가 절제를 안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委員長 崔炳國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증인 채택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 박세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네요, 정말.
- 김종률 위원 지금 절제를 누가 안 합니까?
- 이주영 위원 김종률 위원!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다 알겠다고!
- 김종률 위원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장내 소란)
- 委員長 崔炳國 장내가 조금 정리될 때까지 다

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委員長 崔炳國**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시다시피 예산 관련 민생법안 등 57건의 중요한 법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법률 관련 부처의 국무위원들이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정 때문에 회의를 참석 못 한다고 합니다.

이런 법안을 심사할 때 국무위원들이 자꾸 불참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고요. 이렇게 된 데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자초한 점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도 해 봐야 됩니다.

시간을 좀 엄수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오전에 좀 기다리고 있다가 회의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중요한 일정 핑계를 대 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양당 간사님들, 위원님들 출석도 독려해 주시고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상민 위원님, 선병렬 위원님, 주성영 위원님 그래서 간신히 의사정족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부 다 참석해 가지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정부 제출)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장관은 사법개혁 참여위원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차관님,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영룡** 국방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첫째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둘째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관리의 효율화와 국민의 토지 이용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단일화하여 통합하며, 셋째 토지 이용의 확대와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인 통제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축소하고, 넷째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매수청구와 협의매수 그리고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의 용어 변경과 관련하여 이 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단순히 “보호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보호구역과 혼동될 여지가 있어서 보호구역 대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쪽, 불필요한 정의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 법안의 취지에 맞추어서 “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 법안 유인물 38쪽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의 건축물 건축 등 허용권 신설과 관련하여 이 법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3항은 예외적으로 관할 부대장 등이 일부 비행안전구역에 한하여 일정한 높이를 한도로 하여 건축물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5항은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각 기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의 설명에 따라 개정의 취지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일부 구역에서 고도제한 45m 이내의 건축물 등의 건축에 대해서는 관할 부대장 등이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위 구역에서 45m를 넘어서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거나 그 외 구역에서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 제5항의 법문 표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부대장 등의 권한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병렬적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 시행상 혼선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개정안의 취지대로 45m 이내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할 부대장 등이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45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허용 판단 주체가 상이하여 예를 들어 40m 높이의 건축물은 불허되고 60m 높이의 건축물은 허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역에서의 45m 이내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이를 허용하고, 위 구역에서 45m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그 외 구역에서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하여는 관할 부대장 등이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정리하고, 이러한 관할 부대장 등의 불허 판단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재심의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로 안 제10조제5항 및 안 제13조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별도로 조문 정리를 해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직접 설치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7쪽 “법체계 및 입법취지에 따라 법문 표현 명확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서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가 제출한 법의……

국방위에서 수정된 의견인데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국방부장관이나 관할 부대장이 불허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불허됩니다. 이 경우 처분 당사자로 하여금 직접 협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행정법규의 취지에 따라서 조문을 저희들이 주서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쪽, 국방부심의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된 부분과 토지매수청구권 부분 그리고 벌칙 규정 정리 문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 예.

○**委員長 崔炳國**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우선 전문위원, 지금 법률안 제13조제1항에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의무 신설을 했는데요. 조금 아까 설명한 게 뭐였지요, 협의의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제13조에 대해서는 처분당사자가 이의신청, 예를 들면 사단에서 어떤 보호구역 안의 행위를 허용해 달라는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행정관청이 해당 관할 부대장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할 부대장이 협의 끝에 이것은 안 된다고 불허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받아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자에게 불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만든 것은 그 불허 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관할 부대장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불가하지 않느냐? 그러면 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부대장하고 협의를 다시 하도록 그런 체제로 가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허가 여부는 관할 행정관청이 잦아요?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의의무를 신설

했는데 협의는 했어요. 그런데 관할 부대장의 의견을 행정관청이 무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그것은 일반 행정쟁송 조치로 가야지요.

○이상민 위원 누가 쟁송절차를 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그것은 이해 당사자가 불허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의 성격이 뭐예요? 귀속적 성격입니까, 무슨……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협의인데 사실상 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물 신고 수리 시에 관할 부대장 등과의 협의의무를 신설했으니까 이 취지는 관할 부대장이 ‘노’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안 됩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노’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앞부분의 제13조 마지막……

○이상민 위원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관할 부대장이 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했을 때에는 신고 수리를 반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그게 제13조 마지막 조문을 보시면 협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협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관할 부대장 등이 해당 행정기관에 행위 중지, 허가 등의 취소 또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이 허가신고 수리·반려 처분에 대한 상대방은 개인, 국민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협의를 할 카운터 파트너의 관할 부대장이 무슨 이의를 걸거나 쟁송을 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당사자는 허가처분에서 불허를 받은 민간인을 얘기하겠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할 부대장과 협의의무를 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관할 행정청은 귀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귀속되는 게……

○이상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고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실질적으로 귀속이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제13조제6항을 보시면 그에 따르지 않았을 때 국방부장관이나 관할 부대장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허가 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해당 관할 부대장이 왜 취소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해당 관할 부대장이 취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게 되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제6항을 보시면 거기에……

○이상민 위원 지금 말씀한 내용은 기존의 법에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예,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개정안이 아니고요?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귀속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실제로는 간접적으로 귀속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심의와 달리 이 부분에서는 처분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자는 것이 국방위의 의견이었고요.

○이상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추상적이네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에 관해서 중대한 제한 또는 침해가 있는 인허가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렇게 불특정·불확정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헌 여지가 있는가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실제로 관할 부대장이 ‘노’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노’ 하는 단순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결국 누가 판단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관할 부대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든 이 법이……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을 관할 부대장이 할 텐데 이처럼 불확정 개념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유재량권을 관할 부대장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그래서 이번에 이의신청 제심 절차를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국방위에서 추가한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인허가를 결정할 때부터도 요건을 적시하고 예시적 규정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관할 부대장의 협의, 안 하면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나 권리제한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헌소지가 없나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위에 넘겨서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다듬어야 됩니다. 좀 다듬어 불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개정안이 올라온 이상. 소위로 넘겨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로 일단 넘겨야 하겠습니까마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지금 정족수가 안 되어서 내일…… 의결은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7. 국가회계법안(정부 제출)

(14시58분)

○**委員長 崔炳國**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회계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서도 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가 있어서 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부차관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회계법률안, 2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허브정책의 지속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금융인력수급현황과 전망을 매년 작성·공표토록 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회계법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재정 전체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체계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국가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개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법률안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데 금융 관련 업무라는 것은 그 범위가 모호하므로 이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불필요한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의미가 불확실한 규정 정비도 의미 명확을 위해서 자구정리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서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회계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입법체계와 관련해서 이 법안은 국가회계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무회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내부통제,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등에 관하여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결산과 관련해서는 제3장 결산에서 11개의 조문을 두고 재무보고서 작성·제출 등 결산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무보고서 작성 등 결산자료를 병행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두 법에서 결산의 내용과 절차를 각각 규정하더라도 결산서 제출 시기와 제출 대상 등이 동일하므로 제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나 법률 수요자의 입장에서 결산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일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가재정법이 국가의 예산·결산에 관한 기본법인 점을 감안할 때 국가회계법에 결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은 입법체계상 정치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재정법은 부칙에서 제56조의 결산의 원칙에 대하여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그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안에 따라 재무회계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제정되는 국가회계기준으로 이해되므로 이 법이 제정되어 국가회계기준이 제정되면 국가재정법상의 결산보고서도 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2009회계연도의 결산, 즉 2010년 이전까지는 결산체계를 일원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재무회계의 원칙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4쪽의 중앙관서 재무보고서의 감사원 제출과 관련하여 법안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중앙관서 재무보고서를 2월 말까지 재경부 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0일까지 중앙관서 재무보고서를 통합한 국가재무보고서를 기획예산처 및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 감사원은 4월 10일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만 결산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안이 2월 말에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감사원에 각각의 재무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국가재무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미리 중앙관서 재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결산검사의 업무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결산 관장기관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결산검사 관장기관인 감사원에 국가재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업무효율을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감사원에 재무보고서를 조기 제출하는 것은 그 법적 성격상 차이가 크고 또 재무보고서 조기 제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정부 내부 규율 등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입법사항은 아니라고 보아 중앙관서의 장의 감사원에 대한 재무보고서 조기 제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 관련 규정 보완과 다른 법률 개정과 관련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자구정리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소위원회로 보내자는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그것이 2010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이상민 위원** 우선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안, 국가회계법안은 둘 다 제정법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예.

○**이상민 위원** 그런데 제정법을…… 재경위에서 물론 심도 있게 논의했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우리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안 해도 되나
요, 기본법인데?

○**委員長 崔炳國** 우리 고유 법안이 아니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우리 고유법과 관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차관보께서 나오셨는데, 금
융……

아, 2차관이신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예, 2차관입니다.

○**이상민 위원** 우리 참여정부 내에서 계속 육일
승천 승진을 하고 계시네요. 얼마 전까지 차관보
이셨는데.

금융중심지 조성, 이 핵심은 뭐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선언적 규정들이 많은데 이 법안의
필요성 이런 것은 언뜻 와 닿지 않습니다. 핵심
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마련된
것인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에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

○**이상민 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아는데, 말
고……

이 법안 중에, 몇 개 안 되는 13개 조항이잖아
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예.

○**이상민 위원** 조항 중에서 어떤 실질적 효력,
어떤 조항 때문에 지금 한 것입니까?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예, 그것은 실질적
으로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예,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치도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전
문인력 양성,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인력
양성입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양성이야
실질적으로 집행하면 될 일이지 법이 꼭 반드시
필요하냐고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그런데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좀더 그 지원에 있어, 이미 지금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가지고……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한 기관이 금
융중심지지원센터 아니에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그것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금융중심지는 통상적인 애로사항이
라든지 진입지원, 해외진출, 이런 것들을 서포트
하는 기관이고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은 이미 지금 KAIST 내에도 금융전문대학원
이 설립되어 가지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마
는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측면입
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금융허브정책
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근거법률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허브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추진체계 등이 규정되
면 금융허브정책을 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허브…… 중
심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관계부처들 그리고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 사이의 이해상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근거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조정·통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금융중심지추진위
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하고 그 추진
위원회……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지원센터는 안 제
13조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주요한 이견사항들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
융중심지지원센터나 중심지추진위원회, 이런 것
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법이 필요 있는가?
기존 현행법하에서 재경부가 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그 법률적인 뒷받
침이 있으면 지금……

○**이상민 위원**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확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예산 측면보다는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이 위원회에 법적 근거가
있을 때 좀더 원활하게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
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게 법을 이렇게 생산해서
공포하고 국민들한테 나가면 상응하는 그만한 가

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규칙이나 내부 부령이나 이런 것으로서 충분히 대처 가능하면 그것으로 해결하면 되지 금융중심지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거든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융허브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본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 기본법이라면, 그런 취지의 법이라면 미흡합니다, 내용이.

여기에서 그러면 그것 말고는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무슨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도 무슨 기속력 있는 기관도 아니고 또 추진지원센터… 만약에 한다면 예산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른 법에도 용해될 수 있는 내용일 텐데 무슨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 굉장한 것 뭐가 담겨 있나 하고 살펴보면 내용은 공허합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어떻게 보면 모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내에서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정도의 법안이 마련되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근거법으로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겠다 생각해서 지금 법사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 판단이 이렇게 제정법까지 만들면서 이런 법률… 13개 조항에 무슨 알찬 내용이 담겨 있는가 싶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허브 지향하는 바는, 거기에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법 하나 만들어서 한 것밖에 뭐가 있냐고? 그런데 보니까 정부안에요, 더구나, 의원입법 발의도 아니고. 하여튼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제일 중요한 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이상민 위원 아니, 그건 내가 안다니까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예.

○이상민 위원 취지는 아는데 그렇게 제정법까지 해서 단일법안으로 나와서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가치성이 있는가 싶을 때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 것 아니겠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지금 다른 법률에는 이 금융허브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체계적인 금융허브를 추진하려면 별도의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법안에 자세하게, 금융허브와 관련된 것은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담을 수는 없고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지원센터 이런 골격들을 담았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맺으면서 맺음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률로 해서 다 법률 만능주의 해 가지고 법 만들면, 언뜻 보기에는 이것 예산 확보하기 위한 재정부 차원의 그런 것으로밖에 엿보이지가 않아요.

이 법이 왜 이렇게 단일 제정법으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더 질의하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命柱 委員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중심지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는데 차관께서는 금융허브, 허브 이렇게 말씀하시고 법률용어로는 중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이 상정하고 있는 금융중심지라고 하면 어느 특정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특정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되면 금융중심지라고 하는 특정한 도시나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특정 지역이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방안들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金命柱 委員**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러면 특정 지역은 어떻게 지정을 하게 됩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그것은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것들을 의견 수렴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지역을 지금 금융허브로, 그러니까 지역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경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조정돼 있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북아에서 금융허브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법인 것 같고 또 그러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이 기본계획을 짜고, 예를 들어서 여러 도시에서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금융중심지가 되겠다고?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역특구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 동북아의 금융허브…… 저희가, 허브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됩니다마는 법률용어로서 중심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국제금융자본들이 집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들이 또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항공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어느 한 특정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命柱 委員**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면 방금 차관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중심지를 선정하고 그것을 육성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예,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金命柱 委員**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정권 말기에 이런 중요

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 정부의 임기 내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동북아의 금융허브라는 것은 사실은 특정 정부의 기한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추진해 오고 있고요.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을 지금 추진해 오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金命柱 委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번 더 필요성과 체계 문제 그리고 방금 이것이 실행 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그 기본계획을요, 위원님, 기본계획을 이 법안에도 금융허브 추진 체계가 지금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체계화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의 안 5조하고 6조에서 보면 재경부장관이 매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본계획 심의하고 관련해서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선병렬 위원** 금융중심지의 조성 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개 필요성이나 추진체계 이런 정책적인 것을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법사위에서 상임위에서 한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근본 정책 방향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 갖고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일거리도 가뜩이나 많은데……

○**委員長 崔炳國** 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자구체계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마는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기회 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委員長 崔炳國**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우리가 자구체계라고 해서 글자 하나하나 보고 틀리는 오자 발견하는 자구체계가 아닙니다. 다른 현행법의 체계나 정책적인 것은 법체계의 상관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좀더 의문이 되면 보다 품질이 좋은 법을 생산하기 위해서 법사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정책적인 것은 검토하지 말자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오전에 다른 위원이 발언할 때 끼어드는 그런 행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본인은, 다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해서 소위에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자라고 하면 설사 그것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도 가만히 계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선병렬 위원께서는……

○**委員長 崔炳國** 선병렬 위원님 나중에 참조해 주시고, 이상민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이것은 일단 소위에 회부시켜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가서도 좋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영록** 위원장님, 다음 국가회계법 그것도 같이 지금 소위로……

○**委員長 崔炳國** 그것은 지금 얘기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혁규 의원 대표발의)(김혁규·강길부·권선택·김재홍·김종률·김우남·박찬석·오제세·윤원호·이시중·장복심·정갑윤·조경태·최철국 의원 발의)

(15시20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 기업의 설립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통한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안의 시행 후에 새로 지방에 설립되거나 지방으로 이전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칙의 표현상 개정안 시행 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의 시행 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이 법안이 적용되도록 관련 부칙 표현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소위에 넘기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 출자총액 제한제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로 인한 출자총액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 여러 가지 사정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번 보도자료 보니까 여전히 총수의 실질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지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점이 발표되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심화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 여전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지난번에 여기서 통과시켜 주신 대로 개정된 상태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상민 위원** 그런데 그때 수치를 보니까 몇몇 그룹은 더 심화됐던 것 같은데요, 발표치를 보니까, 발표 자료를 보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예, 그룹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논란은 차치하고 이와 함께, 그러면 사전적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출자총액제를 완화하면 사후적 책임을 묻는 제도는 좀 철저히 정비가 되면서 같이 맞물려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빈틈을 타고서 의원입법 발의로 해 가지고 이런 출자총액제 도에서 하면서 사후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으로 인한 등등의 문제점이 더 증폭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원칙적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지방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거나 또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여기 보니까 “본점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사전적 규제를 기업활동하는 데 그 점에도 동의를 못 하겠습니까만 투자와 출자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도 대기업들, 재벌들이 그렇게 아우성치니까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는 당신들 책임지시오’라는 장치는 마련이 되고 해야 이게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건전한 자본자유시장 경제질서가 정착이 될 텐데, 그런 우려가 계속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이 안과 직접 관련은 안 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사후 규제를 좀더 철저히 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고 저희들 이제 특히 부당지원 행위 같은 것들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하여간 우리가 자본, 재벌, 대기업 이런 등등에 의한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고 순환출자 등등 이런 피해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시정할 수 있는, 책임 추궁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거나 또는 사전적으로 그런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그런 것이 맞물려서 앞의 것이 좀더 완화되면 뒤의 것이 좀 강화되는 그것이 맞물려야 될 텐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의지가 자꾸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자꾸 의원입법 발의로 재벌들, 좀 안 됩니다만 그런 이해 관계가 반영된 법안들이 이렇게 와서 법사위에 있으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이 경우에는 그런 큰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하여간 그런 점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만, 제8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만 지금 의사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9.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김태년·강길부·권선택·김동철·김재홍·김종률·김춘진·김형주·노영민·노현송·문학진·박명광·박상돈·박찬석·배기선·백원우·서재관·신상진·신학용·심재덕·안상수·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제창·윤호중·이광재·이기우·이시종·이영호·이해봉·이화영·장향숙·정병국·정봉주·최용규·최재성·최철국·한광원·한병도 의원 발의)

(15시26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체계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디자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간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되고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각 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독자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및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계획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는 점에서 국가디자인위원회가 산업자원부 소관의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에 불과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디자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가 아니라 산업자원부 소속하에 두고 그 명칭도 산업디자인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초 이 법안도 제명을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디자인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산업디자인을 디자인산업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여 디자인산업 전반을 총괄하려고 하였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행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범정부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위원회는 디자인산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을 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세우며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부처 소관의 디자인 관련 정책의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체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안 부칙 사항의 다른 법률의 개정 부분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추가 부분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호 위원** 예.

○**委員長 崔炳國**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나오신 분은 오영호 제1차관이십니까?

○**산업자원부제1차관 오영호**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산업자원부장관은 오늘 오전에 참석하셨다가 오후 3시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때문에 불참하셔서 참석 못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이것 보셨던가요?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예.

○**문병호 위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래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식의 개정은 하지 않기로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해당 법의 법률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법의 개정에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조문 정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 또 단순히 인용 조문이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칙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문병호 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세워 왔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예.

○**문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나 지향점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전문위원 보고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문광위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금 의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8일~10일 되면 의결되어서 법사위로 올 예정이고 또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수차례 개최가 되고 건교부와 문광부에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 회부를 해서 문광위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면 병합심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개념에 관한 그러한 논쟁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고 2소위에서 문광위 법안이 오면 함께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이상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가지고 제2소위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2.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시33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노동부차관 나오셨지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장관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나오셨다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 보고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부득이 나올 수 없었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차관 노민기** 노동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제도 개선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를 편차를 조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재보험료를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하였고, 둘째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과도한 편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사업종류별 최고 보험료율이 전체 업종 평균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납부하도록 하는 등 보험료 징수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11항 및 제1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필**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사정 간 합의내용을 주로 반영한 것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개 조문 중 40여 개의 조문을 개정하고 37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전반에 걸쳐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 37조 관련입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판단을 노동부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포괄위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으로 구분하여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개정안은 37조1항1호 바목과 제2호 다목에서만 재해의 인정에 있어서 판단기준인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마치 그 목에만 한정해서만 상당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37조1항 단서로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누구나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 43조3항 관련입니다.

43조3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취소와 진료제한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모든 사유에 있어서 취소, 진료제한조치, 개선명령을 규정하고 있어서 매우 경미한 사유를 가지고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진료제한과 개선명령만을 할 수 있도록 3항과 4항을 구분해서 경미한 사유에 관하여는 진료제한 등의 조치만 가능하도록 4항을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 22조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의견진술 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청문 절차를 두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 72조 직업재활급여와 관련하여 1호는 장애급여자 중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 2호는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장애급여자의 사업주에 지급을 하는 내용이므로 보다 이해가 쉽도록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안 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 안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레미콘 차량 운전원 등 4개 직군 38만 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제출되어 있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계류 중인 이 법안에서 과연 4개 직군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개념 그리고 그 보호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 125조에 대하여는 환노위에 계류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노동부에서는 해당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이라든가 보호방안과는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먼저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입니다.

개정안 84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에 대하여 급여액 및 지급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형사적인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한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모두 부정수급자를 처벌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와 연관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일반택시근로자에 있어서 최저임금 산정 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 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어 택시노동자의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택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 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택시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첫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납입제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택시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되는 임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구별하여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로 택시근로자와 유사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업종의 사용자와 비교할 때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본 개정안의 경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정급 인상 및 임금구조 단순화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사납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대립이 야기될 수 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은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택시업계에 대한 국가보조 등의 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밖의 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호 위원** 예.

○**委員長 崔炳國**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호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차관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노동부차관 노민기** 고맙습니다.

○**문병호 위원** 이 법안이 정부에서 6월 1일 제출해 가지고 상정이 6월 20일쯤 되어서 며칠 안하고 바로 통과시킨 것 같아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환노위에서는 그렇습니다.

○**문병호 위원** 6월 18일에 환노위에 상정이 되어서 6월 21일에, 3일 만에 통과가 됐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법이고 전부개정안이고 또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한테는 일부 불이익한 조항도 있는데 심사가 충분히 됐나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차관 노민기** 환노위에서 의견상 보면 빨리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우려가 나오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마는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년간 논의를 했었고 또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것은 작년 12월에 노사정 간에 이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하면서 정부안에서 일부 모가 난 것이 좀 쳐졌고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합의정신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헤아려서 받아들여 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지금 산재기금이 조금은 고갈되고 산재기금의 확충이 요새 문제가 되는 것 같지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그런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산재근로자들에게 아무래도 조금은 급여를 축소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유리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5조와 68조에 보면 고령자휴업급여라고 해 가지고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65세까지 매년 4%씩 삭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문병호 위원** 그런데 61세부터 65세까지 삭감

해야 되는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다치지 아니하고 직장생활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그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해서 소득이 없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다친 분에 한해서는 휴업급여를 일정 연령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이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70세, 80세가 되어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이 되어 있어서 사회정서상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고연령이 되면 휴업급여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문병호 위원** 글썬요, 그런데 고령자의 차별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또 61세 이전 연령하고 61세 이후 연령하고의 형평의 문제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지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치지 않은 사람과 다친 사람과에 있어서 다친 사람을 너무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요양을 계속 해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휴업급여라는 것이 일실 소득에 대한 보상인데요.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연령이 됐으면 소득이 없어졌을 거라는 것이 상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사람들의 경우에? 정년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문병호 위원** 글썬요, 그렇더라도 지금 이 문제는……

○**노동부차관 노민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더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형평성, 평등의 원칙에 좀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 대해서도 이게 종전에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된 임금이 없으면 최초 요양 당시의 임금으로 했나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문병호 위원** 최저임금액을 적용하고, 법을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재요양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경을 하도록, 최초 요양이 아니고요.

○**문병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은 좀 불이익한 변경이 되는 것 같고요.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 주는 것, 제69조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문제는 그다음에 선급금에 대해서 이자를 공제하는 것, 이게 이론상 맞습니까? 선급금이라는 것은 성격상 이자를 공제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인 것 아닙니까? 선급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있나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선급금에 대해서 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반한다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선급금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에서…… 선급, 먼저 주는 것인데 먼저 준다고 해 놓고 먼저 주기 때문에 이자를 까자 이것은 한편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노동부차관 노민기** 그것보다는 오히려, 뒤에 주는 것이 원칙인데 먼저 줬으니까 먼저 받는 것만큼의 페이버(favor)를 공제하는 것이 더 형평에 맞지 않을까요?

○**문병호 위원** 예,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죽 선급금 이자를 공제 않고 주다가 이번에 법안 개정하면서 이자를 공제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도 법안 심사 기간이 좀 짧았고 또 산재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삭감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상 형평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이 법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있지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金命柱 委員** 이번 회기 내에 통과 예상이 안 됩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라서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쟁점이 좀 있어서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개념 규정을 아마 이 법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에 하기 전에 산재와 관련된 것만 특별하게 제125조에 미리 이렇게 정의를 내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과연 옳은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제125조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률안, 지금 심사되고 있는 이런 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는 또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그 법의 핵심 논점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의 어느 조항을 일부라도 적용할 것이냐 또는 어느 정도 특례로 준용해서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의견상으로는 노동자로 보이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지금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노동자성도 일부 있고 또 사업자성도 일부 있는 그 중간 영역을 저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부르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해 낼 것이냐의 문제 하나하고, 법률적으로 정의해 낸다고 하더라도 노동법 조항에 어느만큼 그것을 적용해서 보호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 쟁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산재보험법을 저희들이 먼저 적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산재만큼은 빨리 적용을 해서 보호하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노사정 간에. 2002년도부터요. 다만 구체적으로 보험료를 어떻게 분담을 시킬 것이냐, 기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이고 산재보험만은 먼저

적용하자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특고법 논의에 이것을 너무 연결시키다 보면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특고의 정의조항이 혹시 다음에 고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산재보험이라도 먼저 가야만이 될 필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재보험법을 먼저 가오자 하는 것이고, 이 산재보험을 적용하자라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돼 있고 혹여 일부 직종의 근로자들이 나는 산재보험이 싫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넣어 줬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문제는 특고법하고 분리해서 먼저 갔으면 하는 그런 정책적 필요를 제가 호소드립니다.

○**金命柱 委員** 차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방금 그런 문제 말씀입니다. 제4항을 보면 또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 안 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노동부차관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金命柱 委員** 결국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되고 나머지는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만약에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라면 이 법이 의무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이와 같은 법조문이 있어 가지고 마치 또 임의적으로 되는 형태가 되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 이분들은 사용자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사업주로서의 성격도 일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부 강제 적용을 하되 본인들이 굳이 싫다고 한다면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빼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보험료도 일반근로자들은 당연히 사업자가 100% 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2분의 1씩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사용자성과 근로자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으로서 어느 한쪽으로 저희들이 개념 정의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金命柱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병호 위원님하고 김명주 위원님, 문제되는 법률안이 의사일정 10항 11항 12항, 이 셋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문병호 위원** 저는 11항만요.

○**委員長 崔炳國** 11항만 그러고요.

김명주 위원님은?

○**金命柱 委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가 질의한 부분만요.

○**委員長 崔炳國** 그러니까 그것도 11항이네요.

그런데 10항하고 11항이 같이 연관돼 있어서 하나가 문제되면 다시 다른 두 안을 같이 심의를 해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다 제2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이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문병호 위원** 위원장님, 최저임금법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법도 같이 묶여 있나요?

○**委員長 崔炳國** 최저임금법은 아까 전문위원이 1, 2, 3으로 해 가지고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시다.

그러면 이 3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하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질의도 해 주시고 문제점 제기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리다 보니 전부 소위가 버리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큰 문제 안 되는 것은 좀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13.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59분)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정부가 제출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3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및 제1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에도 여성가족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유아보육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건의 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 문장은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고 문장구조도 어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 변동은 없이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맞춤법, 문장체계의 간결화, 명확화와 일관성이 없게 표현된 부분 및 표현상 일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단순 개정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필**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안 명칭을 모·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인 취약 중인 아동의 범위를 현행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지급받거나 과잉지급받은 복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의견으로 제29조에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사한 법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교부받은 경우 벌칙을 두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위하여 벌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 안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안 부칙 2조는 개정안 시행 전에 안 제25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복지급여와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 과잉지급분에 대하여도 반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치 본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모든 부정수급자의 복지급여와 과잉지급된 복지급여분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러한 부칙 없이 현재도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지급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칙의 규정이 없어도 법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구와 체계에 대한 수정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7년 7월 27일부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8년 7월 28일부로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된 내용이 지금 이 개정법률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된 내용을 본 개정법률안에 추가하고 부칙 제1항 단서에서 그 개정된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원래의 시행예정일인 2008년 7월 28일로 규정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다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체계 및 자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5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마는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16. 農地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 발의)(김낙성·신중식·한화갑·장경수·이인제·김영덕·박병석·류근찬·김학원·홍문표·심재덕 의원 발의)

(16시05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김낙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필** 전문위원입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농지소유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종친회가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문중 구성원의 일부 명의로 명의신탁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친회에 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첫째 헌법 제121조제1항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제6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종친회는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친회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교회 등 종교단체나 마을공동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농지소유 제한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고 종친회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더라도 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농지소유까지 합법화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과 동시에 농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낙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본 법안은 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에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국무위원들은 오늘 바빠 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농림부 임상규 장관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오셨는데 질의하실 것 하십시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委員** 장관님, 농지를 종친회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든지 또 유사한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기존의 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저희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金命柱 委員** 이 부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한번 다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 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 19.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 21. 衛生士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신상진·김태년·이인기·정동채·오제세·안상수·정진석·배일도·이윤성 의원 발의)

(16시10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안 하시겠습니까?

○안명옥 의원 예.

○委員長 崔炳國 그러면 이 6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까.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안명옥 의원님 많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각각 의지·보조기 기사,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사, 의료인, 응급구조사, 위생사 등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를 제외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약간의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데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이 6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 제1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

원장 제출)

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 건복지위원장 제출)

(16시14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급여신청 동의대상자와 금융정보 등 제출의무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3항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급여신청 시 금융정보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 개정조항은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와 유사한 조항입니다.

개정조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신청 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는 때의 동의로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표현입니다.

또한 제21조제1항의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을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로 모두에 표현함으로써 문언상 부양의무자 외의 친족, 기타 관계인이 급여신청을 할 경우에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동의대상자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제출의무자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인 이하의 시설종사자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적용 문제입니다.

안 제35조의2는 상시 4인 이하의 시설종사자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같은 법의 전면적용 또는 일부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타법인 이 법안 제35조의2에서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서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미비나 행정감독상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배제하는 것의 입법 체계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보면, 근로기준법은 다른 법률에서의 특별규정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법이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종사자에 대해서만 해고 등의 제한규정을 들 경우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과 의 형평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안 제35조의2의 신설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 제32조의3제4항은 식품이력 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 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살펴보면 필수적 표시 사항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의 표시 및 영양 표시에 관한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할 때 임의적 표시 사항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도 보건복지부령보다는 식약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적으로나 식품의 표시에 관한 운영의 통일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에 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화장품 용기 표시 사항을 당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으로 확대해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제조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31조는 위탁제조판매업에 대한 신고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제1항은 제조업 허가를, 제2항은 제조업자의 품목별 허가를, 제3항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품목별 허가를 그리고 제4항은 의약외품 제조업자의 제조업 신고 및 품목별 허가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1조제2항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에 위탁제조까지 포함한다고 괄호 안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위탁제조판매업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업자의 위탁제조라는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법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소위원회에 보내고 안 하고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문병호 위원** 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소위로 넘기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행정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금융정보니 뭐니 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이번 개정안에 그 절차를 상당히, 대폭 간소화를 좀 했습니다.

○**문병호 위원** 간소화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예, 예를 들어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때 본인이 꼭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개정법에 따르면이라도 기준이나 등급 매기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다음에 60~70%, 그 판정 기준을 시·군·구 기준으로 합니까, 전국 기준으로 합니까? 그거 결정되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기초노령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병호 위원** 아, 내가 착각했네요. 노령연금법 그것에 관해서인데, 그것은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그것은 지금 행정부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문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소위로 넘기자고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보니까 제31조 제3항·제4항이 신설되었네요. 알선행위하고 호객행위, 이것 2개가 신설되었지요? 제31조 제3항·4항이 신설되었는데 뒤에 벌칙 조항을 보니까 제3항은 벌칙 조항이 있는데 제4항에 대해서는 제재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4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4항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지금 제3항에 대해서는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1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슨 제재 조항이 없나요? 과태료나 이런……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제78조제5항에 보시면……

○**문병호 위원** 제78조제5항에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예, 제5항에 보시면 제3항이 제4항으로 해서……

○**문병호 위원** 아니, 제78조는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조항이고……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실무자가, 잘 아시는 분이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일부러 제재 조항을 안 둔 것인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본부식품정책팀장 이승용**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장 이승용입니다.

제31조제4항은 영업자에 관련된 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현행에 이미 영업자에 관련된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제31조제3항은 영업자가 아닌 누구나라는, 그 도우미에 대한 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문병호 위원** 그러면 영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4항만 신설해 놔도 제재 조항이 해당됩니까?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본부식품정책팀장 이승용** 예, 이미 식품위생법에 영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런데 위반 조항이 조항 조항 특정되어 있잖아요. 몇 조 위반, 몇 조 위반 해서 특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일반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에 영업자가 위반했을 경우

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본부식품정책팀장 이승용** 제31조 영업자 준수사항에 있습니다. 영업자가 도우미를 고용했을 때는……

○**문병호 위원** 일반 조항으로 처벌규정이 있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본부식품정책팀장 이승용** 예, 그렇습니다.

○**문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炳國**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23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안, 법률안 제23조의2제4항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명의인의 요구가 없으면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왜 이렇게 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이것은……

○**이상민 위원** 원래 금융정보를 제공했으면 그에 대한 사실을 금융기관의 장은 통보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통보가 원칙인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 통보할 필요는……

○**이상민 위원** 아니, 사전에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한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조항의 문제점은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명의인의 요구가 없으면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해야만 통보해 준다는 규정이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실지로 운영해 보니까 대부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상민 위원** 그래도 자기의 정보와 관련된 권한·권리에 있어서…… 자기에 관한 정보를 유출해서 다른 데 제공했다고 그러면 그 정보 관련자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편의적으로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은 명의인의 요구가 없으면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특별히 이렇게 예외규정을 오히려 원칙 규정화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이것은 기초노령연금법에도 입법례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우리 본

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 이상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입니다.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노령연금법도 입법례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금융 자산에 대한 것을 통보했을 경우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불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법을 입법할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상민 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본 쟁점하고는 관련이 없고 문제는 자기 정보에 관한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보가 자기의 동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됐다고 한다면 알아야 되지 않나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 이상용** 일반적으로는 그게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하고도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상민 위원**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헌법상 정보와 관련된 관리통제권에서, 정보에 관한 권에서 좀 문제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 이상용** 지금 그 부분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표현은 좀 바꿀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일일이……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장은 원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도록 하되 다만 사전에 동의인이 원하지 아니할 때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면 그게 맞겠지만 이것을 원칙화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체계하고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 이상용** 이게 사실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소위에서 다 들어서 논의해 가지고…… 이 법안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다음에 26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법률안 제40조, 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예산의 한도로 제한하고…… 이것을 상한선을 정하든지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포상금의 상한선……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수익적 행위이기 는 하지만 포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다 등등 이런 게 보통 다른 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지금 법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이상민 위원** 예산의 한도라는 게 자의적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이게 수익행위니까 특별히……

○**이상민 위원** 그렇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려 가도록 신중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바람직한 입법 방향인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예측 가능하게 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얼마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 간단한 것인데, 예산의 범위 한도로 제한하고 이렇게 입법……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위원님,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또……

○**이상민 위원** 전문위원님이 누구신가요?

○**전문위원 임중호** 접니다.

○**이상민 위원** 예산의 한도로 이렇게 제한하는 입법례도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임중호** 대부분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최고 한도를 둘 경우 오히려 포상금 지급 자체 면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뭐가요?

○**전문위원 임중호**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 이하에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한계를 설정한다면 오히려 포상금 지급 자체 면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상민 위원** 불리하다 안 불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법치국가면, ‘법치주의’ 하면 그 핵심이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포상금이 얼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되지 예산의 한도라는 것이…… ‘예산의 한도’가 뭐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위원님, 오히려 이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실질적인 가치를……

○**이상민 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예산의 범위로 하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법에서까지 예산의 한도라는 이런 불확정 개념으로, 예산의 한도라는 게 가시적으로 보입니까? 얼마를 예산의 한도로 할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이것은 이런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네요.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그러니까 그런 관행들을 좀 바꿔 주시라는 겁니다. 옳은 관행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한 조항,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용사·미용사 면허제도가 있으면 그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만이 그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학위 관련해서 취득하면 면허까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한 게 아니라 면허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왜 학위 취득하는 것과 연계시키는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이것은 위원님 취지도 이해를 하겠습니까마는 꼭 그렇다고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정하려는 것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와 동등한 정도 이상의 학위와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니까 어떤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입법 형식으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용사 또

는 미용사의 면허 취득 사유 중에 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그 사유에 들어가는 조항인가요? 아니잖아요. 별도의 조항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 취득에 관한 사유에 조항이 별도로 있지요?

○**전문위원 임중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입법조사관, 이상민 위원석에 와서 부연설명)

그러니까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 취득 사유에 이것을 포함시키는 그런 입법 형식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다른 조항에 넣어 가지고 취득한 자에게…… 이렇게 자꾸 특별 또는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이 입법 형식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여튼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적 말씀드린 제23항, 제26항, 제29항에 대해서는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려고 합니다마는 방금 이상민 위원님께서 제23항과 제26항 또 제29항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전문위원이 또 제24항, 제25항, 제26항에 대해서는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일단 회부시켜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7항 화장품 일부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지금 의결은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재윤·유재건·박상돈·심재덕·한광원·이인기·노현송·이계경·변재일·이종걸·최성 의원 발의)

3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

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엄호성·박명광·유승민·이인기·이해봉·이영호·김태홍·안민석·안상수·배일도·강창일·박세환·최경환·박상돈·김명주·김재홍·박찬숙·김재경·심재덕·우제창·이강두·공성진·이강래·김영덕·이낙연·장영달·최인기·이호용·신상진·김효석·유선호·주승용·신국환·김영선·염동연·이계진·변재일·김성곤·한화갑·고조홍·김재원·한병도·한선교·강기정·김무성·최용규·이상배·조경대·조배숙·정희수·최규성·최구식·최재성·정종복·임인배·권오을·조승수·김정권·이병석·이인제·신중식 의원 발의)

3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재홍·이낙연·엄호성·안상수·김선미·조승수·황우여·배기선·이해봉·신기남·정성호·허태열·김충환·진수희·조성래 의원 발의)

33.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7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정부가 제출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3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제31항 및 제3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춘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인은 한센병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자로 일제강점하에 소록도 등에 격리 수용되어 강제노역, 단종 등 인권 침해를 받았으며 해방 이후에도 1945년 84인 학살사건, 1957년 비토리섬사건, 1962년 오마도간척사업사건 등 각종 피해사건이 있었으나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만 6000여 명의 한센인이 거주하며 이 중 1600여 명은 소록도 국립병원에, 9000여 명은 지역사회에, 6000여 명은 전국 88개 소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66세로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가족과 단절하며 노인성 질환과 빈곤 가운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여 년 이내에 대부분의 한센인이 고령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거 한센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포함한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등에 대한 생활 및 의료 지원을 함으로써 인권 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적 근거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다음으로 법안 원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을 한센인격리사건, 84인학살사건, 비토리섬사건, 오마도간척사업사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결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센인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 방

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한센인격리사건 정의와 관련하여 당초 원안을 ‘한센인 입소자가 해방 이후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로 수정하여 한센인격리사건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였고 비토리점사건의 경우 공권력의 명시적인 개입의 판단이 어려워 원안에서 삭제하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의를 “한센인격리사건에 의해 상해, 폭행, 부당한 감금을 당한 자와 이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단종수술 등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당한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하여 한센인에 대한 과거 피해사건을 진상 규명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생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제정안의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김춘진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중개업은 현대사회에서 만남의 기회가 한정된 성인 남녀에게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서 이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세계화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이주노동자의 증가, 한국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증가로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으나 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결혼중개업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전체 혼인 건수는 36만 건으로 2006년 현재 3만여 건이 줄었으나 같은 기간 국제결혼은 1만 건에서 4만 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는 또 다른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데만 목적을 둔 결혼중개업체와 브로커의 난립으로 인하여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결혼중개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행복한 결혼을 담보하는 초석을 쌓고자 하는 심정에서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원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둘째,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는 결혼중개에 관한 정보의 내용을 광고 또는 설명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대장 및 자료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하여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수정하였고 법안에 결혼중개업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결혼중개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결혼중개업자의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으며 사업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있어서도 법안에 형법 제 228조, 제287조로부터 제 294조까지의 규정으로 확대하여 업체의 투명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본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규제와 감독의 무풍지대에서 활동하던 결혼중개업이 제도권 내에 들어옴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중개업이 건전화될 것이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김춘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33항 및 3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면, 대한적십자사가 자금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용자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의 명확화를 위하여 “정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무부장관”을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만성·난치성 질환과 관련된 한방의료 및 한약제제를 직접 연구·개발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의약육성지역 계획을 수행하는 지방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난치성 질환에 관한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의무규정이 현행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의무 조항과 중복된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는 대신 원안의 취지를 살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등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옮겨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적용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2건의 법률안을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담배갑 포장지의 표기사항에 질병에 대한 경고문구 외에 발암물질을 추가하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할 발암물질을 각 호에 열거하면서 제7호에서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암물질”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표기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발암물질의 종류를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는 한센인피해사건을 한센인격리사건, 84인학살사건, 오마도간척사업사건, 그 밖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들 사건에서 사망, 행방불명 등 피해를 본 자로서 위원회가 피해자로 결정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한센인피해사건 및 피해자 정의 규정은 피해의 범위에 대하여 ‘폭행·감금 및 단종수술 등’으로 나열하는가 하면 ‘사망, 행방불명 등’을 추가하고 있는 등 이들 정의 규정 간에 그 의미가 혼재하여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피해자의 정의 규정에서 개정안과 같이 한센인피해사건과는 다른 구체적인 피해를 별도로 나열하는 것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센인피해사건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피해자는 위원회에서 이들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자 중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결정 주체를 바로잡았습니다.

개정안은 실무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정작 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심사·결정할 뿐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정안이 참고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맡고 있고 실무위원회에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대한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으로 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중복 의료지원금 등의 배제 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9조는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 한센인 중에는 생활이 곤란하여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서 생활지원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이중으로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라 피해 한센인이 이중으로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것은 이 법률안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단서를 추가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위원회가 한센인 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토록 할 경우 별도의 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자구정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및 관련 벌칙에 관하여

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결혼중개업자의 계약체결의무 및 설명의무를 규정한 조항인데 관계 부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조항은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행하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결혼 중개를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민법상 계약은 서면, 구두 등 그 형식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만약 이 조항이 서면계약에 한정하는 취지라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에 “서면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제1항제5호는 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벌칙규정인데 개정안과 같이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라고 하면 계약체결의무와 설명의무 중 어느 것을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 부처는 본 조항의 취지가 계약체결의무 위반에 국한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법문 표현도 그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결혼중개업자의 설명의무에 관하여입니다.

한편 안 제18조제5호가 계약체결의무 위반에 국한되면 이 법안은 계약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어서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약관의 형태로 작성되는 경우 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결혼중개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계약서가 약관이 아닌 경우 법률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에 있어서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움으로써 부당한 결혼중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설명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효과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업소 폐쇄조치의 통보입니다.

안 제19조제3항은 행정청이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함에 있어서 미리 결혼중개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조치가 영업자에게 미치는 권리제한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전통보는 필수적이며 그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단순히 “급박한 사유”라고만 하면 어떤 사유를 의미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예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제명을 한글화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인데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이 법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委員長 崔炳國**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김춘진 의원님에게 오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개의 제정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오늘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한센인피해사건 법률하고 결혼중개업법 이것 소위 넘겨서 가서 토의해야지요? 좀 검토해야 되는……

○**委員長 崔炳國** 한센인은 아니고……

○**문병호 위원** 한센인은 아니에요?

○**전문위원 임중호** 한센인은 그냥 통과해도 별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법안을 다듬었고요, 그다음에 결혼중개업법에 관해서는 소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문병호 위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증원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단이라든가 무슨 실무 공무원 증원이 필요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현재로서는 별도의 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기존 조직으로 하고 증원 여부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이 법안은 사실 행자부하고 증상의가 되어야 되는 법안 같은데……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예, 행자부에서 이 기획단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들도 현재 이 단계에서 무슨 증원을 전제로 한 기획단 설치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장, 이상민 간사와 사회교대)

○**문병호 위원** 아까 임중호 전문위원님, 기획단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지요?

○**전문위원 임중호** 기획단 문제는 일단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행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발의 의원님 측에서도 양해를 하셨고 또 해당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동의를 했습니다.

○**문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인권침해가 많았고 한센인들이 그동안 억울한 사정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오늘 우리 김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도 되고 또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김춘진 의원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게 지금 국제결혼하고 국내결혼 다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범위가?

○**김춘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문병호 위원** 사실은 최근에 국제결혼에 대해서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외교 분쟁도 생기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완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김춘진 의원** 인권침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인권침해에 대한 종합적인 법을 만들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입법에서 고려할 것인지, 그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법안에서 많이 담아 있다고는 보지만 그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30항, 32항은 제2소위에 회부하고 나머지 31·33·34항은 원안대로, 또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0.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7시05분)

○**위원장대리 이상민**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41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적용례를 보완했습니다. 현행법은 토지보상에 관하여 사업인정 전후의 취득에 따라서 보상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안 제70조제5항은 개발이익배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인정 전후에 관계 없이 당해 공익사업의 사업계획·시행이 공고·고시됨으로써 토지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공고 직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부칙 제2항은 안 제70조제5항을 법 시행 후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사업계획과 시행을 공고·고시한 사업에까지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부칙과 같이 규정하면 이미 사업계획과 시행이 공고·고시되었으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인정이 이루어지고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까지 보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을 사업인정 직전의 공시지가에서 사업계획 공고 직전의 공시지가로 앞당기게 됨으로써 보상금액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소급입법에 의한 기대권 침해 및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당보상 위배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사업계획·시행이 공고·고시된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적용례를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약간의 자구수정 외에 체계와 자구에 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6조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현행 동의권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완화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38조 및 제40조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우려

가 있습니다.

다만 조합 설립을 위해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쉽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의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체계 및 자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 기준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체계와 자구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급입법 여부 문제입니다.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 전에 부과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처분의 당시 법률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제징수처분을 받지 아니하나 개정안에 따라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면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자진하여 이미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개정안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에도 이와 동일한 조항을 두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약칭 사용을 위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현행법은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제2항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전문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 어디에도 지방건축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제62조제2항·제4항·제5항, 제63조제2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의 약칭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단입니다. 과태료 규정을 수정 하였습니다.

안 제82조제1항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허위로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제82조제1항제7호는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허위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82조제1항제8조의 경우에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함께 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미 개정된 내용을 삭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된 내용이 한미 FTA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경쟁력 약화와 막대한 농가부채 등의 농가현실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체계와 자구에 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金命柱 委員 김명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입니다. 취지는 개정하는 취지를 단서로 두어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인데요. 취지는 어떤 취지입니까? 차관님.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지금 이 법은 예를 들

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뉴타운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기왕에 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공원, 도로 이런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근지역까지 묶어서 대규모로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런대로 매우 잘 추진이 되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의 경우에도 뉴타운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시들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같은 큰 도시와는 달리 대규모로 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를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와 차등을 두는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金命柱 委員 그런 취지이고 언론에서도 봤는데요. 그런 취지는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법 체계상 이게 그렇다면 일정 규모 이하라고 하는 것이 특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포괄위임입법이 아닌가, 충분히 법률 속에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교부 쪽에서 일정 규모 이하라고 하면 대강 어느 정도 규모라고 알고……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사이에 논란을 벌이면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정부에서 연구를 해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적정한 규모로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법률로 직접 정하지 못했었습니다.

○金命柱 委員 결국은 정부에서 시행령을 정하면 하나로 정해질 것 아닙니까, 일정 규모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金命柱 委員 그러니까 어디부터, 얼마 제공미터 사이로 또 정할 것인데 그런데 입법기술상으로 그것을 정해 가지고 법률을 제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법률 체계상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대체로 그때 논의가 된 사항은 도시의 인구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인구를 150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0만으로 할 것이

나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규모가 적합한지를 연구 검토해서 그 규모를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金命柱 委員** 이 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안된 겁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정부에서 제안된 법률이 아닙니다. 오제세 의원님하고 신상진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각각 별도의 의원입법안으로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金命柱 委員** 원안도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는 일정 규모가 어떤 것이 적합한지에 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서고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金命柱 委員**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 제 생각은 여하튼 이게 시급하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마는 법률 체계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정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행정편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37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金命柱 委員** 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지요.

○**위원장대리 이상민** 예, 소위에 넘기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소위에 회부 의견을 제시한 36번하고 김명주 위원님이 제시한 37번을 제외한 나머지 35번, 38번, 39번, 40번, 41번은 원안 또는 수정안, 대안대로 의결하고 36번과 37번은 2소위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정족수가 충족되면 그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42.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주성영·이해봉·엄호성·김태환·곽성문·유승희·이인기·안병엽·김성조·공성진·이계경·김광원·이상배 의원 발의)

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고조흥·김광원·김명주·김용갑·김우남·김재경·김충환·신상진·안상수·안영근·엄호성·윤두환·이상배·이인기·이주영·이진구·임인배·정의화·정희수·차명진·황진하·허천·허태열 의원 발의)

44.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유필우·장복심·신학용·한광원·원혜영·김정권·김교홍·정장선·박상돈·강길부·변재일·신국환·문석호·주승용·양형일 의원 발의)

4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김정권·문학진·최규성·유승민·최병국·김재운·채일병·정의화·이낙연·주성영·김종률·김효석·이계경·박상돈·오제세·유선호·고조흥·손봉숙·채수찬·임인배·김형오 의원 발의)

4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양형일·우제창·변재일·이종걸·이근식·장복심·조일현·박상돈·노현송·이영순·유선호·최규식·주승용 의원 발의)

(17시18분)

○**위원장대리 이상민** 다음은 42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3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4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46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42항에서 4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부정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단순한

불고지와는 구별해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점검 기록부 교부·고지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데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입니다.

매도청구권 행사요건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제한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필요한 대지 사용권원 확보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주택 등을 장기간 실소유한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실상 매도가 강제되는 토지수용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여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00분의 95를 확보하고서도 일부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주택건설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택지비가 상승되고 또 인근지역 땅값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해결하여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권을 부득이하게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밖에 약간의 자구 수정 외에 체계와 자구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하천수의 사용용도에 환경 개선과 주운(舟運)이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법률인 이 법의 댐의 기능에 환경개선용수 공급과 주운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이전하는 예정지역 안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두 법안 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적용시점의 변경에 관하여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의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구 내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 적용시점을 현행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상민 간사, 최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개정안과 같이 개발행위 허가 적용시점을 앞당기면 개인의 권리행사 제약 내지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상금의 증가는 결국 재정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택지개발촉진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委員 일단 용어와 관련해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주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운’이 어떤 의미입니까?

○전문위원 임중호 배 주, 운행할 운 해서 배의 운행입니다.

○金命柱 委員 이것이 법 조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임중호 예, 지금 상법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다른 법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서 한글화할 때 그런 표현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래서 일단은 상법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문위원 임중호 예, 타 법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金命柱 委員 이상하게 한글화 작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한자를 보면 알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이것 하나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지금

95% 이상이 확보되면 선의의 토지소유자라도 매도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취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렇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무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법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선의의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또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했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저희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었는데요, 다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할 경우에 소수 토지소유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런 논란을 거쳤습니다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金命柱 委員** 그러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보상대금은 어떻게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보상대금은 정상가격, 대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가격을 통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체로 이것은 법원의 판결을 거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도청구를 받는다 하더라도 법익 자체가 지나치게 제약된다든지 가격면에 있어서는 큰 손해는 없을 텐데 다만 본인의 의사에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金命柱 委員**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소수자의 자기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큰 제약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의사일정 제42항과 44항에서 4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이 될 것 같고, 다음 의사일정 제4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김교홍·안상수·박찬석·최순영·박명광·정봉주·민병두·장복심·이경숙·황우여·한광원·이은영·지병문·유기홍·정장선·김영춘·최재성·안민석·우제창 의원 발의)

48.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김교홍·안상수·박찬석·최순영·박명광·정봉주·민병두·장복심·이경숙·황우여·한광원·이은영·지병문·유기홍·정장선·김영춘·최재성·안민석·우제창 의원 발의)

4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5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구논회·신기남·이강래·지병문·정봉주·박병석·권선택·유시민·이인영·김태홍·한병도·김희선·백원우·선병렬·김춘진·강기정·주승용·최순영·장영달·현애자·이영순·권영길·천영세·김태년·최재성·조승수·이광철·이미경 의원 발의)

(17시28분)

○**委員長 崔炳國**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김교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김교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구논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필**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에 사이버대학을 추가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통칭하도록 하며,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11조의2와 관련하여 용어의 약칭을 정리하고 명확화하였으며, 안 29조1항 단서와 관련하여 같은 용어의 중복규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구 정리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의 범위에 사이버대학을 포함시키고 그 지도·감독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하도록 하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법상 재단법인이 해당 시설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2조, 3조와 관련하여 경과조치 규정 등을 통합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구 정리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정식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재교육 등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20조5항, 6항과 관련하여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규정을 통합하였고, 안 부칙 1조 내지 3조와 관련하여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2조는 관련되는 20조2항은 별

도 개정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삭제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구 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11조3항과 관련하여 치과병원장으로 추천되는 자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부칙 14조2항을 신설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직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일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15조를 신설하여 본 개정안이 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 바로 치과병원장이 국립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가 되어야 하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치과병원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장의 임명 시까지는 기존의 치과대학장이 국립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 지위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안 부칙 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구 정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炳國**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委員**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쪽에서도 다 검토가 된 사안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金命柱 委員**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현재 치과대학에 부속되어 있는 치과병원들이 국립대학병원의 체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의과대학에 있는 국립대학병원과 치과대학에 속해 있는 치과대학병원을 분리시키자는 것입니다.

○**金命柱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김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 전문위원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보니까 본 조항보다 부칙 조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칙 조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되었나 모르겠어요.

이것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잘 되었습니까? 부칙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혹시 빠뜨린다든가 문제되는 조항이 혹시 있을까 봐서 걱정되어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강경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충분히 검토가 되었답니다.

○**문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에서 제50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결은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무부의 현황보고 전에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해당 부처에서 참석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일정 제51항부터 57항까지는 이것도 상정 자체가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정이 잘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고유법안은 소위 회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동 법률안과 관련된 법률

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바로 제1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의결사항 아닌가요?

○**委員長 崔炳國** 이것은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의결할 필요 없이 간사와 협의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상정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炳國** 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회의를 마치면서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를 감안해서 단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바쁜 가운데 계시지만 많은 민생법안들이 계류되어 있고 또 이번 정기국회가 제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란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예정된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끝까지 참석해 주신 이상민 위원님, 문병호 위원님, 주성영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법률안 의결과 법무부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명주	김종률	노회찬	문병호
박세환	선병렬	이상민	이용희
이재오	이주영	주성영	최병국

○**출장 위원(1인)**

최재천

○**청가 위원(1인)**

조순형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김춘진 안명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 인 규
 전문위원 장 경 필
 전문위원 임 중 호

(2007. 9. 7 정부 제출)
 9월 7일 회부됨

○정부측 참석자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신 일
 농림부장관 임 상 규
 여성가족부장관 장 하 진
 보건복지부장관 변 재 진
 사회복지정책본부장 이 상 용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이 승 용
 식품정책팀장
 건설교통부차관 이 춘 희
 재정경제부제2차관 임 영 록
 행정자치부제2차관 한 범 덕
 국방부차관 김 영 룡
 산업자원부제1차관 오 영 호
 노동부차관 노 민 기
 공정거래위원장 권 오 승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안상수	이재오	한나라당	2007. 9. 3
김한길	김종률	대통합	2007. 9. 18
이상경	최재천	민주신당	

○의안 회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

(2007. 9. 6 윤두환·정의화·안경률·김재경·이진구·차명진·진수희·김애실·허천·정희수·김석준 의원 발의)
 9월 7일 회부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선병렬·유재건·홍미영·장영달·송영길·신명·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

家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이명규·곽성문·권경석·김석준·김성조·김양수·김정권·박재완·이성권·이인기·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7일 회부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